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8일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황 중 철

나. 제안이유

-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구미과학관 사용료 반환 시 배상금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사용료 전액과 10% 배상금 합산하여 반환(안 제15조)

○ 사용허가 취소 신청일 개정(안 제15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으로 개정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 수정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구미과학관 사용료 반환 시 배상금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5조에서 구미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과 10%의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취소 신청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과학관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관료를 반환할 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일을 사용예정일 3일 전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설사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